

## 【별첨1】

# 차량 유류공급 계약서

차량용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수요자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“공단”이라 하고, 공급자인 000(주)를 “계약상대자”라 하며, 다음과 같이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유류납품)

“공단”은 유류 실수요자로서 소요량을 “계약상대자”로부터 공급 받기로 하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공단”이 소요하는 차량에 유류 공급을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(계약기간 등)

- ① 유류의 공급기간은 2016년 4월 1일 ~ 2017년 3월 31일(12개월)까지로 하며, “공단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협의하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② 유류공급 대상 차량의 대수 및 주유량은 “공단”의 사유로 증·감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통보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한다.

### 제3조(공급 유종 및 방법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“공단”에게 제공하는 유류는 무연휘발유와 저유황경유로 한다.
- ② 유류공급 방법은 주유업체의 주유전용카드 또는 정유사 제휴 카드사가 발급한 주유전용 카드에 의하며 “공단”의 차량에 공급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공단”에게 유류 공급시 주유량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며, 영수증에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, 원본을 운전자에게 발급한다.
- ④ “계약상대자”는 주유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주유카드상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주유하며, 차량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주유를 거부하여야 한다.
- ⑤ “계약상대자”의 차량번호 확인 소홀로 “공단”의 소유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“공단”에게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- ⑥ “공단”은 주유카드 분실시 지체없이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분실 주유카드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.
- ⑦ “계약상대자”는 세차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주유차량에 대하여 무료 세차

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세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조(납품기준가격 및 자료제출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“공단”에게 공급하는 유류단가(ℓ 당)는 유가연동제에 의하며,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『가격정보』 서울지역 유가 게시가격에 계약단가 결정시의 낙찰율을 곱하여 단가를 산출하며, 매월 정산한다.  
※ 한국석유공사 서울지역 유가 게시가격(납품일 전주 평균 게시가격) × 낙찰율 = 적용단가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당월 유류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위 ①항의 적용단가로 산정한 월별 정산금액과 차량별 주유내역서 및 한국석유공사 고시 가격표를 지체없이 “공단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대금지급 방법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까지의 차량별 주유내역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청구하고, “공단”은 카드사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하며, 결제 수수료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카드사의 청구서가 상이할 경우 상호간 확인 후 익월 정산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계약해지 및 배상책임)

- ① “공단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,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 
가. “계약상대자”가 저질류를 공급하여 “공단”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.  
나.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정(휴업, 폐업)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“공단”이 인정한 경우.  
다. “공단”의 형편에 의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전항의 가, 나 호로 인하여 “공단”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#### 제7조(배상책임 면제)

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.

**제8조(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)**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, 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부득이하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“공단”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“공단”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.

**제9조(조문해석)**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,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“공단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의 상호협의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0조(관할법원)**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“공단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11조(계약서의 보관)**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공단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03. .

**(“공단”)**

- 기 관 명 :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
- 주 소 :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구)마장동 527-6
- 대 표 자 :
- 사업자등록번호 : 206-82-04293
- 전 화 번 호 : 02) 2290-6150

**(“계약상대자”)**

- 상 호 :
- 주 소 :
- 대 표 자 :
- 사업자등록번호 :
- 전 화 번 호 :